##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031

발의연월일: 2024. 7. 19.

발 의 자: 박수현ㆍ이병진ㆍ임호선

이개호 · 임오경 · 안호영

조인철 • 전현희 • 박지혜

황명선 · 오세희 · 복기왕

이기헌 · 이광희 · 김남근

문금주 • 권향엽 • 김 윤

이연희 • 황정아 • 위성곤

박선원ㆍ허 영ㆍ채현일

양부남 • 김기표 • 이재강

김성환 의원(28인)

### 제안이유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빈번한 자연재해로 농업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지만,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하고, 임산물의경우 가입 대상 품목도 제한적이어서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사례도있음.

또한, 실효적 재해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재해의 빈번함에 비해 장기로 규정되어 있어 효과적인 대응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이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보다 단기로 개선하고, 가입대상 품목이 아니어서 보험 가입을 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례 등에 대한 재해보상 대책 마련을 의무화 하며, 가입자 보험료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명시함으로써 농가와 어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5년마다 수립하는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2년으로 변경하고,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 및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에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등의 품목 수와 관련한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하며, 수립한 기본계획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조의2).
- 나. 국가는 농어업 재해를 입었음에도 불가피한 사유로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해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함(안 제6조제3항).
- 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 법률 제 호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5년마다"를 "2년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인정하는 사항"을 "인정하는 사항(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건의하는 사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은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등의품목 수와 관련한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는 농어업재해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가피한 사유로 재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 에 따른 농가 및 어가가 같은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보험료의 일부와"를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하며"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의 수립ㆍ시행) ① 농림축산식	의 수립·시행) ①
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	
험"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	
하여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	
험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 어촌정책심	
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u>5년마다</u> 수립·	<u>2년마다</u>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②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 및 대	3
상 지역에 관한 사항 <후단	<u>이 경</u>
<u>신설&gt;</u>	우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은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등의 품목 수와 관련한 형평
	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재해보험 활성화를 5.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 ⑤ (생 략) <신 설>

⑥ (생략) 제6조(보상의 범위 등) ①・② (생 략) <신 설>

- - ----인정하는 사항(산림청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에게 건의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 ③ ~ ⑤ (현행과 같음)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 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 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 제6조(보상의 범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국가는 농어업재해로 피해 를 입었음에도 불가피한 사유 로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 8호 및 제9호에 따른 농가 및 어가가 같은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책 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9조(재정지원) ① 정부는 예산 제19조(재정지원) ① -----

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u>보험료의 일부와</u> 재 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 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하 "운영비"라 한다)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 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로 지원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u>보험료의 100분의 8</u>
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하며
,
<u>.</u>
② ~ ④ (현행과 같음)